	_	보 도 지	료			
국토교통부	배포일시	2019. 7 총 6매	T			
	담당	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		사장 이대섭, 사무관 노경우 ✿ (044) 201-3855, 3858		
환경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		환 경 부 교통환경과	• 과장 김영민, 사무관 김미노 • ☎ (044) 201-6920, 6928			
		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	• 처장 김용달, 차장 김호경 • ☎ (054) 459-7510, 7518			
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		한국환경공단 운행차관리팀	• 팀장 이광욱, 과장 • ☎ (032) 590-5187,			
보도일시		2019년 7월 1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9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		

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단속…처벌기준 강화 추진
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전국 1,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(이하 '민간검사소')^{*}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'19.5.14.부터 6.10.까지 실시한 결과 47곳을 적발했다.
 - * 지정정비사업자: 자동차관리법 제45조(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)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
 - 이번 점검은 불법·부실검사 방지대책('18.11.21)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 으로 진행됐으며,
 -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,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71곳을 선정했다.

<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>

	점검권역		점검결과		
구분		참여 기관명	점검 (A)	적 발 (B)	적 발률 (B/A, %)
		총계 271 47		17.3	
제1팀	서울·인천· 경기북부	지자체, 수도권대기환경청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	38	2	5.3
제2팀	강원·충북· 경북	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	64	17	26.6
제3팀	대전·세종· 충남·경기남부	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	47	6	12.8
제4팀	부산·대구· 울산·경남	국토교통부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	60	8	13.3
제5팀	광주·전남· 전북·제주	국토교통부, 환경부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	62	14	22.6

- □ 점검대상 271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 - 불법·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71곳을 점검한 결과, 점검대상의 17.3%인 47곳을 적발했다.
 - * 2018년 상반기 합동단속('18.6.21~7.6): 148곳 점검 44곳 적발(적발률 29.7%) 2018년 하반기 합동단속('18.11.5~12.7): 286곳 점검 61곳 적발(적발률 21.3%)
 -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**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건(68%)**으로 절반을 넘었으며, 검사기기 관리미흡 9건(19%), 기록 관리 미흡 3건 및 업무범위 초과 2건 등이다.

< 세부 위반사항 >

위 반 내 용			비율(%)
구분	세부 내용	47	100
검사항목일부생략 및 거짓기록	제원변경 미확인,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,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	32	68
검사기기관리 미흡	검사기기 교정,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	9	19
기록 미흡	전면 사진 인식불가(촬영상태, 카메라위치 부적정)	3	6
업무범위초과	지정기준(시설, 장비, 인력) 미달 상태로 검사시행 등	2	4
기타	다른사람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	1	2

- o 적발된 민간검사소 47곳은 검사소 **업무정지(47건), 검사원 직무 정지(46명)**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.
 - *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(검사소)와 직무정지(기술인력)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
- □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"올해부터는 특별점검 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5월까지 72개 업체를 적발"했으며,
 - * 교통안전공단 직원 3명이 전담하여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(VIMS)의 자동차검사 결과 및 검사사진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불법·부실검사 의심업체 적발
 - "금품수수·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지정취소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, 검사원역량강화 및 검사업체 대표의 사용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붙임 질의응답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노경우 사무관(☎ 044-201-385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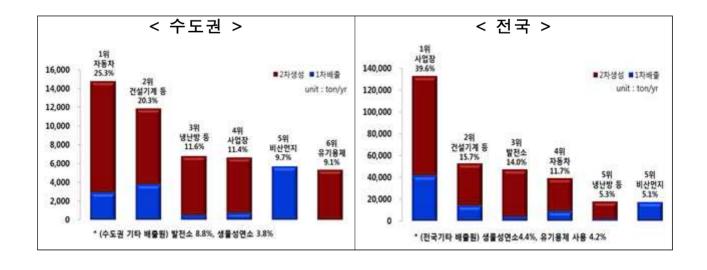
질의응답

1. 이번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?

- □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, 특히 대도시 지역 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큼
- □ 하지만 민간자동차검사소의 검사결과 조작,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음
- □ 이에 우리부에서는 불법·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('18.11.21)하여 년 2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하고 있음

2.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?

□ 전국의 배출기여도는 11.7%이며,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5.3%로 1순위 배출원임



3.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?

- □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
- 중합검사는 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,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(종합검사시 정기검사 생략)
- ※ 상세사항 붙임 3

4.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?

- ☞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
 - * 자동차관리법 제84조, 시행령 별표 2
- ☞ 검사 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*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항

5. 민간검사소가 왜 부정검사를 계속하나?

- □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,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,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·편법검사 만연
- □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검사원 교육, 시설개선에 소극적 대응하여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 발생

6. 자동차검사소는 민간검사소 밖에 없나?

□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검사소와 39개 출장검사소 등 98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

7. 검사 불합격시 차량 소유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?

- □ 검사기간* 만료일 이전에 불합격된 경우 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정비·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함
- □ 검사기간* 외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된 날 이후 10일 이내 정비 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
 - * (검사기간)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

< 참 고 >

- ① (과태료) 검사기간 만료일(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) 까지 불합격된 경우 이후 30일까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
- ② (검사명령) 검사기간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난날(과태료 2만원 부과 시점)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을 받게 되며, 검사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